

조선 시대 여성 유배객의 유배 실상 연구*

- 관련 규정, 사례 및 실상 -

조수미**

<차례>

1. 서론
2. 여성 유배 관련 규정
3.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되는 여성 유배 사례
4. 일기류 작품에 기록된 여성의 유배 실상
5. 결론

<국문초록>

유배는 양반 남성들만의 형벌이 아니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평민과 천민 등 양반 남성이 아닌 이들도 유배되었다. 그런데도 양반 남성에 비해 비 양반 남성의 유배 실상에 대한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유는 비 양반 남성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유배의 실상 및 유배문학 연구는 주로 양반 남성 유배객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양반이 아닌’ 평·천민과 ‘남성이 아닌’ 여성의 유배 실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필요성에 따라 비 양반 남성 유배객 가운데 특히 ‘여성 유배객’의 유배 실체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의 유배와 관련한 예외적 규정을 우선 확인하고, 실록에 등장하는 여성 유배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여 여성 유배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일기류 자료를 통해 여성 유배객의 유배 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였다. 여성의 유배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예외 규정은 아예 ‘여성은 가능하면 유배 보내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5863)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않는다'라는 것이었으나, 실제 여성 유배는 빈번히 발생했다. 간통이 가장 흔한 사건이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성들도 유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여성들이 비슷한 비율로 유배되었으나, 궁궐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 궁녀들의 유배 비율이 압도적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무엇보다 실록의 여성 유배 관련 기록들은 여성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제 여성의 유배 생활이 어땠는지를 증언하는 자료는 희소하다. 여성들 스스로 기록을 남긴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남성 유배객의 일기에 드문드문 등장하는 여성 유배객 관련 기록을 보완하는 것이 남성 가족의 유배길을 함께 한 부인들이 기록한 <건거지>, <고행록>과 같은 회고록 성격의 작품들이다. 이 기록들에는 남성 양반들의 유배일기에서 스치듯이 기록된 것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여성 유배 생활의 실체, 즉 임신과 출산, 남녀유별의 예와 금기 등이 유배 생활의 고통과 불편함을 가증하는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유배라는 형벌이 양반들이 정쟁에서 함부로 휘두르기 위해 사용한 조악한 걸일 뿐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배가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과 천민, 여성에게도 내려졌던 형벌이고, 사형과 그 외 형벌 간의 지나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여성 유배객, 『조선왕조실록』, 『목민심서』, <남정일기>, <남해문건록>, <태화당북정록>, <건거지> <고행록>

1. 서론

유배는 양반 남성들만의 형벌이 아니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평민과 천민 등 양반 남성이 아닌 이들도 유배되었다. 그런데도 양반 남성에 비해 비 양반 남성의 유배 실상에 대한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유는 비 양반 남성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유배의 실상¹⁾ 및 유배문학 연구는 주로 양반 남성 유배객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현전하는 유배일기는 거의 양반 남성 유배객이 기록한 것이므로 이 일기들을 근거로 유배의 실상을 탐색한 모든 연구는 달리 말하자면 ‘양반 남성인 유배객이 겪은 유배 생활’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유배문학 연구도 마찬가지다. 중세 정통 문학 장르의 주 생산자는 양반 남성들이었다. 따라서, 유배문학 연구 또한 달리 말하자면 ‘양반 남성인 유배객이 유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²⁾

이에 ‘양반이 아닌’ 평·천민과 ‘남성이 아닌’ 여성의 유배 실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³⁾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 1) 유배 생활에 대한 탐색이 거의 양반 남성 유배객에 한정되어 있음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민홍, 「우암의 장기 유배생활 실상과 저작활동」, 『한국한문학회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김경숙, 「17세기 후반 유생 이익필의 유배생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조지형, 「자암 김구의 유배생활과 우중유락의 면모」, 『한국시가문화연구』 26, 한국고서기문학회, 2010; 우인수, 「조선 선조대 지산 조호익의 유배생활」, 『조선시대사학회』 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최성환, 「두류단을 통해 본 김평목의 지도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최성환,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역사』 36, 부경역사연구소, 2015; 한정호, 「김려의 창원 유배생활과 저술 활동」, 『한국지역문화연구』 6-2, 한국지역문화학회, 2017; 김경숙, 「유배, 일상의 단절과 소통-박태보의 선천 유배 생활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62, 한국고문학회, 2023. 등의 연구는 모두 양반 남성의 유배에 집중하고 있다.
- 2) 유배문학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작품들도 예외 없이 양반 남성들이 작성한 한시, 가사 등의 정통 한문학 작품과 일기류 등이다. 박무영, 「거세된 언어와 사적 전언: 이광사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방식」,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박명희, 「문곡 김수항의 시문에 구현된 영암 유배지에서의 생활」, 『호남문화연구』 43,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8;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정현영해 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김경옥, 「〈간정일록〉을 통해본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1; 문희순, 「이문건의 성주 유배생활과 〈목휴청수〉」, 『연가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최성환, 「〈속음청사〉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지도(智島) 유배생활과 도서지역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최성환, 「〈자산록〉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지방사외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2017. 등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요성에 따라 비 양반 남성 유배객 가운데 특히 ‘여성 유배객’의 유배 실체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 유배와 관련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실록에 등장하는 여성 유배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여 여성 유배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기류 자료를 통해 여성 유배객의 유배 실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했다.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겪은 유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배라는 형벌의 본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2. 여성 유배 관련 규정

조선 시대의 형법은 기본적으로 대명률을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규정이나 적용 가능한 원칙 등을 보완하면서 점차 확정되었다. 유배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정과 보완의 과정은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장에서는 유배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확정해 나가는 사이사이에 여성의 유배와 관련된 어떤 예외적인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첫째, 가장 눈에 띄는 예외 규정은 ‘여성들은 가능하면 유배 보내지 않는다’란 것이다. 여성 죄인의 형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꽤 자주 등장한다.

임금이 동부대언 정흠지(鄭欽之)에게 이르기를, “박행의 처는 종친이다. 이 죄를 결단하기란 내 매우 곤란하며, 또 몹시 부끄럽기도 하다. 비록 귀양보내려

3) 심재우, 「조선시대 유배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연구학회 및 목포대학교 HK+사업단 공동학술대회-유배를 통해 본 도서 지역의 문화변동-발표자료』, 2021년 8월 17일.

고 한들 부녀자이니 어찌 남자와 견주어 귀양보내겠으며, 비록 죄를 주려고 한들 중친이니 어찌 보통 사람에 비교하여 죄주겠는가:.....”⁴⁾

박행의 아내가 계집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종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먼저 세종은 박행의 처에게 유배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로 그녀가 중친이라는 점과 부녀자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긴 논의 끝에 결국 유배형에 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박행 아내가 유배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중친’이라는 점 때문이었지만, 더불어 ‘부녀자는 귀양보내기 어렵다’라는 규정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형률(刑律)의 조문(條文)에는, 부인(婦人)이 죄를 범하면 자자(刺字)를 면하고, 나머지 죄는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했으니, 이로 인하여 여자로 도둑질을 범한 사람이 매우 많아져서 그들의 간사하고 교활함이 남자 도둑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2관(貫) 이상을 범한 사람은 육지(陸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나누어 귀양보내고, 세 차례나 도둑질을 범한 사람은 모두 나누어 귀양보내어 백성의 해독을 제거하소서.”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滄)·윤사훈(尹士昕)·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갑자기 새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⁵⁾

부인들을 처벌하는 데 다소 예외적인 적용을 허용하다 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은 내용이다. 유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장형(杖刑)과 속전(贖錢)으로 대신하다 보니 오히려 여성 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형조에서 건의

4)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26일.

5)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6일.

하였다. 그러나 긴 논의 끝에 ‘갑자기 새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즉 부녀자의 경우 유배형을 장형이나 속전으로 대신한다는 기존의 예외적인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개 부녀자를 귀양보내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⁶⁾, “여인은 연좌돼야 할 일이 아니면 본디 귀양보내는 규례가 없다”⁷⁾, “여인과 나이 70 이상인 자에게는 정배하는 법이 없다”⁸⁾ 등의 언급이 여성 죄인의 형을 확정하는 논의에서 계속 발견된다.

즉, 명백히 성문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여성에게는 유배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지켜지는 예외 규정이었던 것이다.

둘째, 여성 유배객에게는 결행(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점이 많다. 『목민심서』에는 유배형을 적용할 때 목민관으로서 주의하고 살펴야 할 것들이 매우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 유배객과 관련된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사족(士族)으로서 귀양 와 있는 자는 그 점고를 마땅히 향승(鄕丞)·형리를 시켜 밖에 앉아서 살펴보게 하고, 두어 달 사이에 혹 한 번 친히 가 보아

-
- 6) 대사헌(大司憲) 민취도(閔就道)가 말하기를, “김석주(金錫胄)·이사명(李師命)의 아내는 교기(郊畿)에 누워 쉬면서 꺼리는 것이 없으니, 멀리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고 대신에게 물었는데,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이 다 죄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니, 드디어 그대로 따랐다. 대개 부녀자를 귀양보내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12월 3일.
- 7)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개(臺啓)에 따라 역신(逆臣) 이상로(李商輅)의 아내를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해야 하겠는데 지금 고양(高陽) 땅에 있으니, 경기 도신으로 하여금 배소(配所)를 정하여 압송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여인은 연좌돼야 할 일이 아니면 본디 귀양보내는 규례가 없다.”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1월 16일.
- 8) “호적이 누락된 사람들을 일체 사목에 의거해서 전가 정배(全家定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인과 나이 70 이상인 자에게는 정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참작하여 규례를 정해야만 중외에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 <현종개수실록> 18권 현종 8년 11월 1일.

야 한다. 부인인 경우에는 처음 오면 마땅히 얼굴을 가리고 관정에 들어오게 하며, 목민관은 방문을 닫고 보지 말며 관비(官婢)를 시켜 호송한다. 또 그 부인이 거처하는 이웃에게 엄중히 신칙하여 남자들은 일체 왕래하며 엿보거나 대접하기를 무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한다. 한 번 가 본 후에는 다시 몸소 가 보는 일이 없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여종을 보내어 보살피며 명절에는 쌀과 고기를 보내 주어야 하니, 본래부터의 친척이 아니더라도 의리상 이렇게 하여야 마땅하다.⁹⁾

유배지의 목민관은 여성 유배객을 점고(點考)할 때 함부로 그 여성 유배객의 얼굴을 보아서도 안 되고, 점고를 번거롭게 행해서도 안 되며,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는 ‘의리상’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모든 계층과 상황의 여성 유배객에 실제 두루 적용되었을까?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약용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족으로서 귀양 와 있는 부인’이다. 또한, 그는 연좌된 여성 유배객에 대한 연민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당과의 화가 반복되면서 이른바 역적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도 있고 원통한 것도 있는데, 원통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여러 아버지나 여러 아들과 그 형제들이야 무슨 죄가 있을 것인가? 더구나 그 부녀자로 여종을 삼으면 유약한 여자의 성품이라 죽지 못하여 사는 것이니 인인 군자(仁人君子)로서 마땅히 측은하게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인데.....¹⁰⁾

정약용은 아버지나 아들의 죄가 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좌되어야 하는지 물음으로써 연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남편의 죄에 연좌되어 부인과 가족들이 함께 유배되는 것은 유배의 유형 가운데 ‘전가사변(全家

9) 『목민심서』 刑典 6조 恤囚.

10) 상동.

徙邊’에 가깝다. 전가사변은 조선에서 구체화 된 법제로 가족 모두를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강도 높은 형벌이다.¹¹⁾ 전가사변은 형벌이기 이전에 빈영토에 백성들을 채우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기도 했으나 너무나 과도하여 조선 후기에는 폐지되었다. 연좌는 바로 이런 전가사변에 비견될 수 있다. 따라서 연좌된 부녀자들의 고통은 ‘유약한 여자의 성품’에 비취 더 클 것이므로 목민관은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에게 당부하고 있는, 유배형의 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여성 유배객은 특히 ‘사족’에 속하는 상층 계급의 여성과 ‘연좌’라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은 결행하지 못한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하나 불기를 치는 것은 더욱 욱된 일이다. 부녀자는 비록 살육죄를 범하였더라도 그 태아(胎兒)의 유무를 살피고 나서 형벌을 시행하는 법인데 하물며 다른 죄에 있어서라? 부녀자에게 불기를 치는 자는 그 고쟁이를 벗기고 속치마만 입힌 다음 물을 끼얹어서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니, 그것이 법정(法庭)에 있어서도 오히려 보기에 거리긴다.....¹²⁾

그렇다고 해서, 하층 계급의 여성이나 연좌가 아니라 본인의 죄로 유배된 여성에게는 이러한 예외적인 배려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목민심서』에는 유배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의 경우에도 여성은 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행해야 한다고 또한 당부하고 있다. 특히 임신한 여인에게에는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되고, 여인의 신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여성 유배객에게 유배형을 집행할 때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주의하도록 한 규정은 사족의 여성이나 연좌된 여성에게만 적용된 것이라기보

11)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이학사, 2016, 367쪽.

12) 『목민심서』 刑典 6조 愼刑.

다는, 여성에 대한 형 집행 자체를 그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하고자 한 조선 시대 법 운용 태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요컨대, 여성의 유배와 관련하여서는 ‘가능하면 여성은 유배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결행하게 되더라도 남성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예외적 규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되는 여성 유배 사례

‘여성들은 가능하면 유배 보내지 않는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유배형을 집행하는 일이 많았다.¹⁴⁾ 이 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실제 조선 시대 여성 유배의 사례를 검토하였다.¹⁵⁾ 남편이나 아들 등의 죄에 연좌된 경우는 제외하고, 여성 당사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최종적으로 유배형을 받은 사례만을 포함하였다. 유배형에 대한 논의만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제외하였다. 실록에서 발견한 여성 유배

13) 그렇다고 조선 시대 여성들이 법적으로 월등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죄를 지은 여성의 법적 책임을 남편이나 친족에게 귀속(『목민심서』 刑典 6조 愼刑)시켰는데, 이는 부녀자를 당당한 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사안(간통이나 강상죄)에는 종종 부녀자에게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숙종대에 조정을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유정기와 그의 부인 신태영의 이혼소송에서 아내 신태영에게는 유배형 외에도 사족의 부녀에게는 엄청난 수치이자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신체형까지 가하였으나, 남편 유정기에게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에 해당하는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였다.(강명관, 『신태영의 이혼소송 1704~1713』, 휴머니스트, 2016, 87~88쪽) 유정기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참고했던 성비희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결말을 보였다. 성비희는 남편 유진과 마찬가지로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훨씬 멀고 위험한 곳으로 유배되었다.(강명관(2016), 위의 책, 93~96쪽.)

14) 서병한, 이상욱, 『한국법제사상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천』, 『여성문제연구』 12, 대구 효성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83, 11~12쪽.

15)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의 국역본에서 검색어 ‘定配, 流配, 귀양’을 포함한 기사들 가운데 여성 유배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여성 유배 사례〉

번호	피의자	사건 유형	사건 개요	관련 기사
1	박저생의 처		계집종을 가까이한다고 질투하는 처를 박저생이 구타한 사건. 박저생도 귀양.	<태종실록> 3권 태종2년 6월11일
2	윤지성의 처		질투하여 종을 죽임. 윤지성도 처벌 받음.	<숙종실록> 23권 숙종17년 11월28일
3	숙비, 어머니 막생	질투로 인한 고문, 살인 등	신자치의 처 숙비가 남편과 간통한 중 도리를 고문. 둘은 이혼시키고, 공조자인 어머니 막생도 유배.	<성종실록> 48권 성종5년 10월10일;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1일, 11월2일, 11월13일, 11월18일
4	여비 눌덕		용수의 가슴과 배를 들이박아 태를 떨어뜨려 죽게 함.	<세종실록> 21권 세종5년 9월25일
5	내은지		장영기의 처 내은지가 계집종의 남편인 도라대와 간통. 도라대는 사형.	<세종실록> 42권 세종10년 11월3일, 11월14일
6	옥진		이숙이 아우의 첩 옥진과 간통. 이숙도 유배형.	<성종실록> 36권 성종4년 11월19일, 11월25일; <성종실록> 37권 성종4년 12월18일
7	기생 초요갱	간통	신자형이 초요갱 때문에 정처를 소박하고 가비 두 사람을 죽임	<단종실록> 13권 단종3년 2월27일, 3월1일, 3월6일, 3월7일, 3월9일; <세조실록> 8권 세조3년 6월26일, 7월17일; <세조실록> 9권 세조3년 10월7일; <세조실록> 31권 세조9년 윤7월4일; <세조실록> 39권 세조12년 9월11일
8	존금		부마 임광재와 관계한 존금을 외방에 부처함.	<성종실록> 292권 성종25년 7월18일, 7월20일; <성종실록> 293권 성종25년 8월7일

9	여중		간음한 여중을 순화군 이보가 외딴 섬으로 유배.	<선조실록> 128권 선조33년 8월10일
10	정은부의 처 정씨	간통	공씨가 하치성과 정씨를 간통하도록 유인.	<성종실록> 231권 성종20년 8월1일
11	이순지의 딸		여장 남자 사방지가 이순지의 딸과 간통.	<명종실록> 8권 명종3년 11월18일
12	영선		이영구의 처 영선이 유취와 간통.	<현종실록> 19권 현종12년 5월3일; <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11년 4월10일
13	성비희	불효/동기간 불화	시부모에 불손하였음.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사망.	<현종실록> 15권 현종9년 10월3일;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9년 10월3일; <숙종실록> 53권 숙종39년 4월27일
14	윤씨		아버이 사망시 분상하지 않음. 동기 윤성동을 빨리 죽이라 함.	<영조실록> 80권 영조29년 7월5일
15	신태영	이혼	유정기가 이혼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신태영 사이 불화.	<숙종실록> 53권 숙종39년 4월27일, 5월26일
16	무녀 보문	음사	성녕대군의 병세를 살피지 않고 음사를 하여 대군을 죽게 함.	<태종실록> 35권 태종18년 2월11일, 3월5일; <세종실록> 3권 세종1년 1월29일
17	무당 막례		대궐 안에서 도사(禱祠)하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함부로 행동함.	<숙종실록> 15권 숙종10년 2월21일
18	명혜 공주방의 무녀		사치스럽게 음사를 행함.	<숙종실록> 30권 숙종22년 1월15일
19	효명 옹주	저주	인평 대군 저주.	<효종실록> 7권 효종2년 12월21일; <효종실록> 9권 효종3년 9월12일; <효종실록> 20권 효종9년 5월21일
20	궁인들		인조를 저주한 사건에 관련.	<인조실록> 39권 인조17년 9월2일, 10월14일
21	봉보 부인 응옥	의무 소홀	대군의 죽음과 이로 인한 왕비의 죽음에 책임.	<인조실록> 31권 인조13년 12월27일

22	궁녀	절도	어기(御器)를 절도하여 팔아먹음.	<영조실록> 39권 영조10년 9월27일
23	궁인 귀례	죄명 불상		<숙종실록> 19권 숙종14년 8월25일
24	궁녀 혜영			<영조실록> 68권 영조24년 10월17일
25	희봉			<순조실록> 3권 순조1년 7월12일
26	옥매, 순업, 주사리	모함 및 무고	십일녕이 매부 이만운이 동생 심명애를 죽였다고 무고. 이에 이만운의 여종들이 협력.	<숙종실록> 50권 숙종37년 9월2일
27	유용의 처 간아		유용의 처 김간아지가 남편의 사촌 동생 안정형의 처 김씨를 내쫓으려고 두 집의 노비 및 중 각돈 등을 시켜 간통 모함.	<성종실록> 87권 성종8년 12월23일, 12월25일
28	김하재의 청지기의 처	격쟁		<정조실록> 20권 정조9년 10월10일
29	옥복	慈殿을 원망한 죄		<명종실록> 28권 명종17년 12월16일; <명종실록> 29권 명종18년 6월9일
30	태애	부정	정유현의 아내 태애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서사촌 이동번이 사비 종일을 범하여 낳은 아이를 데려다 키움.	<숙종실록> 8권 숙종5년 6월4일
31	서울 여인	사기	관을 사칭하여 재물을 징수.	<정조실록> 34권 정조16년 3월14일
32	이관원의 처(홍계능 의 딸)	나라 모함	나라 신하를 욕하고 나라를 모함하는 말을 함부로 함.	<정조실록> 4권 정조1년 9월8일
33	왜인과 술을 마신 여인	풍속을 해침	함께 왕래한 사람들 모두 유배.	<현종실록> 4권 현종2년 5월28일

실록에서 발견되는 여성 유배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 죄목으로 가장 압도적인 사건은 ‘간통’이다. 전체 사건 가운데 대략 1/4을 차지한다. 특히 더욱 비난받았던 사건은 상전의 부인이 종의 남편과 간통하거나, 상피(相避)나지 말아야 할 관계의 사람들이 간통하는 등 강상죄까지 겸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 간통의 상대도

사형에 처하거나 유배 보내졌다.¹⁶⁾

여성 유배형의 주요 원인으로 간통죄가 언급되었던 것은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후기에 여성이 유배되는 경우는 대개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나 남편의 반역죄에 연좌된 경우, 간혹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¹⁷⁾이다. 조선 시대에도 간통죄로 인해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도 유배되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실록에까지 특별히 기록된 간통 사건들에는 기록으로 남길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 형 확정에 대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특별히 실록에 상세히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가령, 이숙과 옥진의 간통 사건(6번)은 유배형 확정 이후의 상황까지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유배 중이던 이숙과 옥진이 각각 모친상과 모친의 병을 핑계로 배소를 떠나 서울로 돌아와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신하들은 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종은 신하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아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 그들이 간통한 것을 증명할 수 없었으나 단지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유배형을 내렸으므로 그들에게 가혹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왕의 입장이었다. 부마 임광재와 존금의 간통 사건(8번)도 왕과 신하가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사건이었다. 허집이 부마 임광재는 가까운 곳에 부처(付處)하고 칩 존금은 멀리 부처한 것에 대해 형평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거듭된 성종의 완곡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허집이 집요하게 항의하자 결국 성종은 대신들

16) 다만, 기생 초요갱의 사건(7번)은 특이하다. 그녀는 평원대군 이임, 화외군 이영, 계양군 이충 등 왕자들과 연이어 관계하여 비난받았고, 신자형과 안계담이 초요갱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구타, 살인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초요갱은 신분도 미천하였고 형제인 왕자들과 상피난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간통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요갱은 세종조에 제정한 악무를 전승한 귀한 예기(藝妓)였기 때문에 유배 등의 벌을 받고도 금세 풀려나고 결국에는 면천하였다.

17)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성문학회 연구』 19, 한국고전연구성문학회, 2009, 40~44쪽.

이 강경이라는 위세가의 눈치를 살피서 존금을 위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는 발언까지 하기에 이른다. 유희와 영선의 간통 사건(12번)은 간통을 저지른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쏟아져 임금과 신하 사이에 논의가 많았던 사건이다.

이처럼 위정자들 간에 명확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간통 사건은 실록에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에는 죄와 그에 합당한 형벌의 수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례와 규정을 들어가며 논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에는 형률 적용의 바람직한 태도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둘째, 유배 여성의 신분은 계층상 특별한 경향성은 없는 반면, 궁녀라는 특수 신분의 여성이 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공주 및 고위 관료의 부인이나 딸, 혹은 일반 사족의 부인이나 딸 등 신분상으로 상층 계급에 속하는 여성 유배객은 전체 사례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기생이나 무녀 및 여종 등 신분상 하층 계급으로 분류되는 여성 유배객도 대략 30% 정도를 차지해서 계층상의 경향성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 유배객 가운데 일종의 특수 신분이라 할 수 있는 궁녀들이 다수라는 사실이 특이하다. 아무래도 궁녀들은 왕을 포함한 최고위층 위정자들과 밀착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분이나 직업군의 여성에 비해 유배형을 받을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다른 이들을 저주하거나 절도를 하는 등의 범죄 행위들이 민간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했을 테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이 빠짐없이 유배를 당한 것은 아니다. 즉, 유배형을 받은 궁녀들이 비교적 다수인 이유는 그녀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는 그녀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 위정자들이 있는 궁궐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배된 궁녀들과 관련하여 특이하게도 죄명이 불분명한 경우(22번, 23번, 24번)가 많은데, ‘함부로 행동한다, 불량하다’라는 이유가 유배의 원인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실록에조차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는 궁녀들이 얼마나 손쉽게 유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성 유배는 신분상 고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궁녀라는 특수 신분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 유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간은 궁궐이다. 전체 발생 건수의 대략 30% 정도가 궁궐에서 발생했다. 죄목은 저주, 음사(陰祀), 의무 소홀, 절도 등으로 다양한데 심지어 죄명 불상도 있다.

저주, 음사 사건은 궁녀들이 왕족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의 고명딸인 효명 옹주는 인평 대군의 저주 사건(19번)으로 유배되었는데, 시아버지 김자점과 남편 김세룡의 역모죄에 단순 연좌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주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져 처벌을 받았다. 인조의 저주 사건(20번)에 연루된 궁녀와 무녀들도 다수는 형신(刑訊) 중 사망하고 일부가 겨우 살아남아 유배형을 당했다. 이처럼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저주 사건은 그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이므로 이를 둘러싼 조정의 열띤 논의들이 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궁궐에서 무녀들이 주도하여 음사를 행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태종의 막내아들 성녕 대군의 치병을 위하여 음사(16번)를 행했으나 결국 대군이 사망하자 이에 참여한 판수, 국무 등이 모두 처벌을 받았던 사건처럼, 저주 및 음사는 대체로 왕족들과 관련된 것으로 자칫하면 처벌받기 쉬운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실록에서 발견한 여성 유배 사건들의 특징은 '간통 사건이 가장 흔하지만, 그 못지않게 여성들이 여러 범죄의 피의자로 유배형을 받았고,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유배형이 내려졌으며, 궁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연루된 궁녀 등이 다수 유배형을 받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록의 기사들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성 양반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다수 유배되었다는 바로 그 점이다.

4. 일기류 작품에 기록된 여성의 유배 실상

유배의 구체적 실상에 대한 기록은 유배일기가 가장 풍부하지만, 이렇게도 여성 유배객에 의해 직접 기록된 유배일기는 많이 전하지 않는다. 대신, 양반 남성들이 기록한 유배일기에서 여성 유배객의 모습을 드물게 발견할 수 있다.¹⁸⁾ 주요 유배지에는 유배객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유배일기의 저자가 따로 의도하지 않아도 다양한 계층의 유배객들이 일기에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유배일기의 저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계급의 다른 양반 남성 유배객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고 일기에 종종 기록하였으나, 평민이나 천민, 여성 유배객들에 대한 기록은 일기에 별로 남기지 않았다.

① 울산 사람 영망(英望)의 딸이 찾아왔다. 영망은 곧 김홍보(金弘寶)의 아내로서 살인 사건의 일로 이 고을에 귀양 온 자이다. 하인 시장(市上)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였더니 나를 보자 옷깃을 잡고 통곡을 한다. 정경이 매우 애처로웠으나 짐 실은 말이 이미 출발한 터라 줄 만한 물건이 없어 손시삼에게 10전을 빌려서 주었다……¹⁹⁾

② 하루는 어떤 여인이 뜰에 와서 말하되, 서울에서 귀양 온 사람일러니 양식을 얻으십시오요 하거늘 혹 임금에게 불충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흉악한 짓에 연좌된 죄인인 줄로 여겨 사람더러, 급히 내어 보내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복 서리의 계집으로서 귀양 와 불쌍하니이다. 하거늘, 내 자세히 물으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사복 서리 김가의 정처로 아들

18) 현전하는 유배일기 작품은 40여 편에 달하지만(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최은주, 「조선조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그 속에서 여성 유배객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

19) 蔚山人英望之女尋來。英望卽金弘寶之妻，而以殺獄事定配此縣者也。送奴市上而招來。見余挽衣而痛哭情境悶憐，卜馬已發無物可給。貸孫生十錢而給之。(『國譯 太和堂北征錄 全』,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汝星門會, 2007, 57쪽)

놓고 살더니, 지아버가 탄 계집을 얻어 정신을 잃고 깊이 빠지거늘 시앗 새암하다가 지아버로부터 죄를 몹시 얹혀 귀양 와서 십 년이 되어 이리 서럽게 되어 빌어먹고 지내웁니다. 하거늘,

내 이르되 여자의 편성이 강새압함이 혹 괴이하지 아니하거니와 어찌 대단히 해괴한 짓을 하여 그리되었는가? 하니, 제 말이 연하여 지아버의 흉을 일컬으며, 어성과 안색이 심히 어그러지고 독살스러워 화평한 거동이 전혀 없으니, “군자가 절교하여도 사나운 말을 내지 아니한다”하니, 이런 도리를 하천인에게 책망할 바가 아니어니와 김가 서리로 이른들 유자식한 정치를 불과 강새암한 일로 귀양 보내어 10년을 버려두니, 가위 유시부유시처(有是夫有是妻)이었다. 주인 집 기둥에 부화부순(夫和婦順)이라고 입춘글을 써 붙였거늘 주인더러 가르치며, 너희는 이처럼 하라, 하니 대소하더라.²⁰⁾

③ 여기 풍단이란 귀양 온 계집이 있으니 십여 년 전에 일곱 달에 자식 낳기로 변이라 하여 귀양 보낸 줄 들었더(니) 들으매 그 우민을 보고 싶으되, 대혹으로 보내었다하여 못 보다²¹⁾

유배일기에 남아 있는 여성 유배객에 대한 기록에는 그녀들에 대한 동정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표면적인 데 그친다. ‘나를 보자 옷깃을 잡고 통곡을 한다. 정경이 매우 애처로웠으나 줄 만한 물건이 없어 손시삼에게 10전을 빌려서 주었다(①)’거나 주인이 ‘이 사람은 사복 서리의 계집으로서 귀양 와 불쌍하나다’라고 하니 함께 동정을 표하다가도, 곧 그 여성이 ‘지아버의 흉을 일컬으며, 독살스러워 화평한 거동이 전혀 없’자, ‘유시부유시처(有是夫有是妻)’라고 비웃고(②), 칠삭둥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십여 년이나 귀양살이하는 여성을 ‘구경’ 가려 하기도 한다.(③) 이처럼 양반 남성들이

20) 유의양 저, 최강현 역,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건록』, 신성출판, 1999, 90~92쪽.

21) 여기 풍단이란 귀양 온 계집이 이시니 십여년 전의 날곱월의 주식 나기로 변이라하여 귀양 보낸 줄 드렸더(니) 드르매 그 우민을 보고시브디 대혹으로 보내었다하여 못 보다 <남정일기>(띄어쓰기 필자, 본문의 인용문 현대어역 필자)

기록한 유배일기가 여성 유배객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작품이 분성군부인 허씨의 <건거지>와 한산 이씨의 <고행록>과 같은 작품이다. 모두 남편이나 아들의 유배를 동행했던 경험을 회고록의 성격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건거지>는 소현세자의 며느리이자 경안군의 부인이었던 분성군부인이 두 아들을 따라 제주도 등의 유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부인의 부탁으로 소현세자의 외증손인 박사수에 의해 한문으로도 번역되었다.²²⁾ <고행록>은 숙종조 퇴당(退堂) 유명천(柳命天)의 부인 한산 이씨가 남긴 작품이다.²³⁾ 이 작품은 61세 되던 숙종 45년(1719)에 저자가 쓴 필사본과 150년 후 한양 조씨가 베껴 쓴 후사본이 함께 전해져 국어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자료이기도 하다.²⁴⁾

다만, 이 일기들은 유배 당사자의 일기가 아니라 유배 간 아들이나 남편을 따라간 여성이 기록한 일기라는 점에서 일인칭의 유배일기와는 구분된다. 본인의 죄로 인해 유배된 것이 아니라 연좌되었다는 점, 게다가 기록자가 최상층 가문의 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품이 그려내는 유배 생활은 일반적인 여성 유배객의 삶을 대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이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어 여성 유배객의 유배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건거지>의 분성군부인 허씨는 유배지에 도착한 이후 자식들의 연이은 투병, 모기떼와의 싸움, 입에 맞지 않는 식생활, 제주 관아의 부당한 간섭과

22) 정우봉,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연구(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67~168쪽.

23) 김갑기, 「미발표 韓山李氏 『苦行錄』의 저술배경과 문학적 가치」, 『국어국문학』 122, 국어국문학회, 1998, 171쪽.

24) 김갑기(1998), 위의 논문, 169쪽.

통제, 비좁고 허름한 주거 공간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²⁵⁾ <고행록>의 한산 이씨도 마찬가지다. 거둬지는 유배길에서의 고통스러운 일상들이 끊임없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으로 남성에게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에게 더 큰 문제일 수는 있지만, 여성 유배객만 겪는 것은 아니다. 양반 남성들의 유배일기들을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배지의 낮은 환경으로 인한 일상의 고통을 호소한다. 따라서, 여성 유배객의 유배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유배 생활의 특별한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⁶⁾

① 절박한 정에 그래도 살아날까 바라다가 유월의 어느 저녁에 잃어버려 괴산 선영으로 저를 보내고 애 미어지고 밤이면 자리를 만지며 먹던 젖을 짜며 간장이 촌촌이 녹는 듯 견디어 살기 어려워되²⁷⁾

② 십일월에 변이를 낳고 명년 이월에 삼척으로 옮기라 하시는 명이 의외에

25) 정우봉,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연구(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144~148쪽.

26) 유배길에서 의외로 자주 겪게 되는 일 가운데 상사(喪事)가 있다. 특히 집안 어른들의 상사에 상인(喪人)인 남편이 유배로 인해 함께할 수 없게 되면 배행하던 부인이 여자의 몸으로 힘든 상사를 치러야 했다. <고행록>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부모가 위독한 경우 유배지 이탈이 가능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왕의 특별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유명천은 허락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한산 이씨가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했다.(김엘리, 「한산이씨의 <고행록>으로 본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삶」,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학회, 2017, 207~208쪽.) 그러나, 이런 류의 고난도 ‘여성’ 유배객이기 때문에 겪는 것은 아니다.

27) 절박(切迫)한 정(情)의 그러도 사라낼까 바라다가 육월(六月)의 일석(一夕)의 일허 버려 괴산(槐山) 선영(先塋)으로 저를 보내고 애 미어디고 밤이면 누었던 자리를 만디며 먹던 젖을 짜며 간양(肝腸)이 촌촌(寸寸)이 녹는 듯 견디어 살기 어려워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행록苦行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59쪽)(본문 인용문의 현대어역 필자)

내리니 천은이 호탕하여 더욱 감격하였으나 부인이 갖 해산하고 정치 못하여 하며 어린 것도 병든지라 길이 근심하고 염려 놓이지 아니하되 일로에 대접함이 귀양 가는 행차 같지 아니하매 무사히 득달하니라. 부인이 본대 짓이 없어 해남 있을 적도 매양 관비를 빌어 아이를 먹이더니 정읍 촌사를 지날 때 짓이 없어 민망하여 하더니 그 마을 사태우에(?) 부녀 서너 사람이 울로 좃아와 말로 위로하고 그 중에 나이 젊고 젖 있는 이 밤에 와 젖을 먹여주니 그 후한 뜻이 가히 감격하더라²⁸⁾

무엇보다 여성 유배객을 괴롭힌 가장 큰 고통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중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산 이씨는 남편 유명천이 유배되자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적소로 찾아갔다. 만삭인 몸으로 힘든 길을 걸어 적소에 도착한 뒤 해산하였다. 고대하던 아들이었으므로 조심스러운 마음에 병을 앓고 계신 시부모님께는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애지중지 보살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를 잃게 된 것이다. 아이를 보낸 뒤 빈자리를 쓰다듬으며 부인이 느낀 이쁨이 매우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① 분성군부인 허씨의 유배길은 제주로 향하는 바닷길이라는 점 외에는 그다지 험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종친에 대한 숙종의 배려로 가는 길마다 고을 원들이 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배길이 비교적 수월했다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을 막 겪은 여인에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허씨 부인의 큰 며느리는 남편인 임창의 유배길을 배행하는 도중에 출산했는데,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낫선 유배지 이곳저

28) 십일월의변야틀나코명년이월의삼척을움기라하시는데명의외에느리니천은이호탕하여 더욱감격하시니부인이갓해산하고 덩치못하여어린것도병든지라길회근심하고넌네노히디아니히딜로에대접함이(ㅎ미)귀향가는헝츠긋디아니히미무스히득달하니라부인이본대짓이업서희남이실적도뎡양관비롤비러아히를먹이더니정읍촌사를지날시져시업서민망하여하더니그마을스태우의부녀서너사람이울로조차와말로위로하고그중에나히젖고젖있는이밤에와젖(저)술먹여주니후후쓰디가히감격하더라. <巾車志> 102쪽(본문 인용문의 현대어역 및 띄어쓰기 필자)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바람에 젖이 돌지 않아 고생하였다.(2)

③ 도시들이 이르되 두 공자는 우리 타는 배에 한가지로 오르고 내행차는 마땅히 다른 배를 타라 하니 내 결단코 배를 한가지로 타려 함을 도사에게 전하여 이르니 도사 이르되 우리는 내행은 알지 못하고 다만 두 공자만 맡았는지라 하물며 내행을 한가지로 배 탐이 체면에 미안하니 가히 명을 좇지 못하노라 하거늘²⁹⁾

④ 바람을 기다려 배에 오를 때 사람들이 이르되 자식 뻘 사람이 한가지로 배를 타면 바다 건너기에 이롭지 아니하다 하는고로 도사 부인의 몸 뷘지 않을 줄 알고 반드시 임창으로 더불어 각 배에 오르라 하니 부인은 사체 날로 더불어 다름이 있는지라 능히 힘써 다투지 못하여 마침내 각 배에 오르기를 면치 못하되³⁰⁾

‘여성’ 유배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상의 불편함도 있다. 남녀유별의 예나 여성과 관련된 금기 및 터부 등이 그러한 불편함을 가중한다. 분성군 부인 허씨는 유배지 제주도로 가는 배에 아들들과 함께 오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압송관 도사들은 내행(內行)과 한 배에 타는 일이 ‘남녀유별의 예’에 어긋나는 ‘체면에 미안한 일’이라고 하며 거절한다. 허씨 부인의 간곡한 요구로 결국에는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지만, 만약 허씨 부인이 군(君)들의

29) 도스들이닐오더두공즈는우리타는비에한가지로오르고내행차는마땅히다른배를타라하니결단코비를흔가지로타려하를 도스의계던혀여니로니도시니로더우리는니행(은)아디못혀고다만두공즈만맛났는디라하물며니행을흔가지로비트미테면의미안하니가히명을좇지못하노다하거늘<市車志> 68쪽(인용문의 현대어역 및 띄어쓰기 필자)

30) 바람을기다려배에오를제사람들이닐로(오)디즈식뻘사람이한가지로비를트면바다건너기에리타아니타하는고로도시부인의몸뷔지아닌줄(니물)알고반드시남창으로더브러각비에오리라하니부인은스테날노더브러다르미잇는디라능히힘써도토지 못하여미춤니각빅에오르기를면치못하디. <市車志> 101쪽(본문 인용문의 현대어역 및 띄어쓰기 필자)

어머니가 아니고, 숙종과 왕실의 배려도 없었다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③) 당장 허씨 부인의 며느리인 임창의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배에 올라야 할 때는 금기를 이유로 한 배에 오르는 것이 거부 당했다.(④)

한편, <건거지>와 <고행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 유배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들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목민심서』에는 “부녀자로 여종이 된 자는 반드시 점고를 받고 또 그 안색이 아름다운가를 엿보니 무례 박덕(無禮薄德)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³¹⁾라며 ‘요즘 풍속이 경박’함을 문제 삼고 있다. 여성 유배객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거지>와 <고행록>은 모두 힘든 유배길과 유배지 생활을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기록한 사람이 종친이나 고위 관료의 부인인 상층 계급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 유배객들이 겪었음직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통해 관찰자의 입장으로 스치듯이 바라보고 기록한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여성 유배 생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및 유산의 고통, 여성의 팔다리를 묶는 여러 가지 규범이나 금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차마 말 못 할 일들이 특히 ‘여성’ 유배객의 고통을 가중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유배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배와 관련한 예외적 규정을 우선 확인하고, 사료에 등장하는 여성 유배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여 여성 유배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일기류 자료를 통해 여성 유배객의 유배 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

31) 『목민심서』 刑典 6조 恤囚.

하였다.

여성의 유배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예외 규정은 아예 ‘여성은 가능하면 유배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으나, 실제 여성 유배는 빈번히 발생했다. 간통이 가장 흔한 사건이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성들도 유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여성들이 비슷한 비율로 유배되었고, 궁궐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 궁녀들의 유배 비율이 압도적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무엇보다 실록의 여성 유배 관련 기록들은 여성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제 여성의 유배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하는 자료는 희소하다. 여성들 스스로 기록을 남긴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남성 유배객의 일기에 드문드문 등장하는 기록을 그나마 보완하는 것이 남성 가족의 유배길을 함께 한 부인들이 쓴 회고록 성격의 기록이다. 이 기록들에는 남성 양반들의 유배일기에서 스치듯이 기록된 것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여성 유배 생활의 실체, 즉 임신과 출산, 남녀 유별의 예와 금기 등 유배 생활의 고통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일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여성 유배의 실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단지 그동안 이가 빠져 있었던 퍼즐을 맞추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입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결국 오해라는 결과를 낳는데, 유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 양반 남성들‘만’이 유배형을 받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유배라는 형벌은 정쟁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조선 시대 형벌 제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한다. 여성 유배의 실상을 정확히 파헤치는 것은 이런 오해로 가는 길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의미가 있다.

요컨대, 유배라는 형벌은 조선 시대 사람들이 정성 들여 구축하고자 한 거대한 구조물의 일부이다. 시대와 역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오차를 줄여 만들어보고자 한 어떤 복잡한 구조의 중요한 구성품인 것이다. 유

배라는 형벌이 양반들이 정쟁에서 함부로 휘두르기 위해 사용한 조악한 검일 뿐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배가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과 천민, 여성에게도 내려졌던 형벌이고, 사형과 그 외 형벌 간의 지나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교육지책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문헌

<남정일기>(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巾車志>(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행록 苦行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1~183쪽.

유의양 저, 최강현 역,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건록』, 신성출판, 1999, 1~229쪽.

『國譯 太和堂北征錄 全』,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汝星門會, 2007, 1~324쪽.

목민심서(<https://db.itkc.or.kr/>)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강명관, 『신태영의 이혼소송 1704~1713』, 휴머니스트, 2016, 1~203쪽.

김갑기, 「미발표 韓山李氏 『苦行錄』의 저술배경과 문학적 가치」, 『국어국문학』 122, 국어국문학회, 1998, 169~184쪽.

김경숙, 「17세기 후반 유생 이익필의 유배생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271~301쪽.

_____, 「유배, 일상의 단절과 소통-박태보의 선천 유배 생활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62, 한국고문서학회, 2023, 31~54쪽.

김경옥, 「<간정일록>을 통해본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1, 115~149쪽.

김난옥, 「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5~63쪽.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이학사, 2016, 1~548쪽.

김엘리, 「한산이씨의 <고행록>으로 본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삶」,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학회, 2017, 199~221쪽.

문희순, 「이문건의 성주 유배생활과 <목휴창수>」, 『연가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81~104쪽.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정헌영해저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381~409쪽.

박명희, 「문곡 김수항의 시문에 구현된 영암 유배지에서의 생활」, 『호남문화연

- 구』43,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8, 35~69쪽.
- 박무영, 「거세된 언어와 사적 전언: 이광사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방식」,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67~97쪽.
- 서병한·이상욱, 「한국법제사상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천」, 『여성문제연구』 12,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83, 5~23쪽.
- 심재우, 「조선시대 유배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연구학회 및 목포대학교 HK+사업단 공동학술대회-유배를 통해 본 도서 지역의 문화변동-발표자료』, 2021년 8월 17일.
- 우인수, 「조선 선조대 지산 조호익의 유배생활」, 『조선시대사학보』 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89~122쪽.
- 이민홍, 「우암의 장기 유배생활 실상과 저작활동」,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227~257쪽.
- 정우봉,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연구(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167~197쪽.
- _____,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연구(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139~180쪽.
- 조지형, 「자암 김구의 유배생활과 우중유락의 면모」, 『한국시기문화연구』 26,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0, 341~373쪽.
- 최성환, 「두류단을 통해 본 김평묵의 지도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459~493쪽.
- _____, 「<속음청사>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지도(智島) 유배생활과 도서지역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215~239쪽.
- _____,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역사』 36, 부경역사연구소, 2015, 207~245쪽.
- _____, 「<자산록>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지방사와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2017, 87~131쪽.
- 최은주, 「조선조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5~40쪽.
- 한정호, 「김려의 창원 유배생활과 저술 활동」, 『한국지역문화연구』 6-2, 한국지역문화학회, 2017, 49~77쪽.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3~910쪽.

ABSTRACT

Exploring the Exile Life of Female Exiled Person
in the Joseon Dynasty*

Cho, Su-mi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ality of exile of 'female exiles.' To this end, we first identified exceptional provisions related to exile, reviewed articles on the exile of women in historical material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exile cases, and explored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exile life of female exiles through diary data. The most important exceptional provision related to the exile of women was that "women should not be exiled if possible," but in reality, female exile occurred frequently. Adultery was the most common incident, but women were also exiled for various other reasons. Women of the upper and lower classes were exiled at similar rates, but the rate of exile of court ladies involved in incidents that occurred in the palace was high.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testifies to the specifics of women's actual exile life. This is because women rarely left records themselves. The diaries that supplement the records that appear occasionally in the diaries of male exiles are memoir-like diaries such as <Geongeoji> and <Gohaengnok> written by wives who accompanied their male family members on their journey of exile. These records vividly record the pain and discomfort of exil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examples of gender segregation, and taboos.

In order to avoid misunderstanding that exile was merely a crude sword that the nobles used to wield in political strife, it must first be acknowledged that exile was a punishment that was imposed not onl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3S1A5B5A17084937)

on the nobles, but also on commoners and women.

Key Words Female Exiled Person, 『Mokminsimseo』,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Namjeongilki>, <Namhaemungyeonrok>, <Taehwadangbukjeongrok>,
<Geongeoji>, <Gohaengnok>

논문투고일: 2024.10.15.

심사완료일: 2024.11.08.

게재확정일: 2024.11.17.